

잊지 마세요!

동물을 판매 하려면 등록하세요.

동물판매업 · 동물장묘업의 등록

- 반려동물(개)을 판매목적으로 생산, 수입, 판매하는 업을 하고자 하는 자와 동물전용의 장례식장·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·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시·도 조례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.
- 동물판매(장묘)업자는 각각의 준수사항이 있고 일정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
동물실험윤리위원회

-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해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의 기관, 각종 법률에 따른 (시험)연구기관, 학교, 의료기관 등 동물실험시설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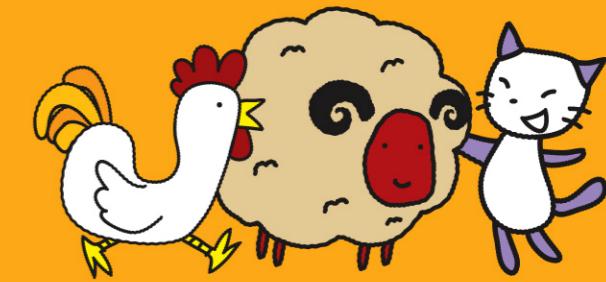
» 벌칙 및 과태료

- 동물을 학대하면 - 500만원 이하 벌금
-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직무시 비밀 누설 또는 도용하면 - 500만원 이하 벌금
- 동물판매(장묘)업 등록을 인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- 100만원 이하 벌금
- 유기동물과 안내견 등 인간을 위한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하면 - 10만원 이하 벌금
- 동물을 유기하면 - 50만원 이하 과태료
-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 인하면 - 50만원 이하 과태료
- 동물판매업자 · 동물장묘업자 교육을 안 받으면 - 50만원 이하 과태료
- 동물보호(명예)감시관의 직무를 거부 · 방해 · 회피하면 - 50만원 과태료



축산정책국 기축방역과 T.02-500-1933, 2097

www.maf.go.kr



동물보호법 개정
2008년 1월 27일 시행

♡ ♡
사랑한다면
지켜주세요!

반려동물(개, 고양이 등) 사육 및 유기동물의 증가로 인한 광견병 등
인수공통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· 관리하기 위해
개정한 동물보호법을 2008년 1월 27일 시행합니다.





명심하세요!

외출할 때 인식표 부착!

등록대상동물의 등록

-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이 반려동물(개)을 등록하도록 하는 경우 반려동물(개) 소유자는 소유동물의 월령이 3개월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시 · 군 · 구에 동물등록신청서를 작성 · 제출하여 등록해야 합니다.

인식표의 부착

- 소유자가 반려동물(개)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소유자의 성명, 주소,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인식표(전자태그 등)를 부착시켜야 하며, 인식표가 없는 동물은 유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.
- 인식표를 부착시키지 아니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됩니다.

안전조치 등

- 소유자가 반려동물(개)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, 배설물이 생긴 때에는 즉시 이를 수거하여야 합니다.
- 위반 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됩니다.

기억하세요!

동물을 버리는 것은 범죄입니다.

동물학대 등의 금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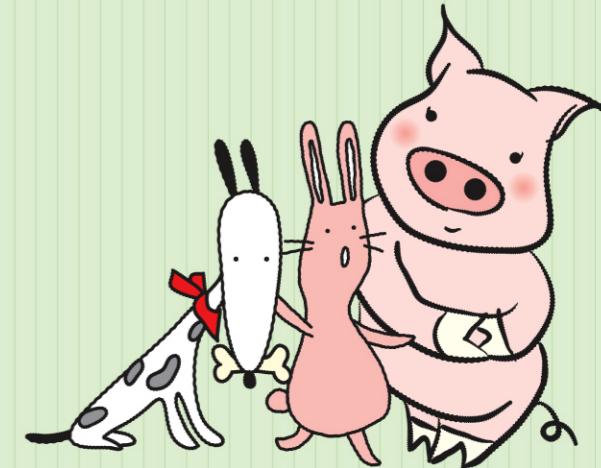
- 잔인한 방법 등으로 죽이는 행위, 상해를 입히거나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, 도박 · 광고 등을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 동물에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유기된 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여서도 안 됩니다.
- 다만, 수의사법에 따른 진료행위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일부 제외되며,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.

유기동물 등의 조치

-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안 되며, 위반 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시장 · 군수는 도로 ·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발견할 경우에는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, 공고시작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해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 · 군 · 자치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.
- 소유권이 귀속된 동물은 시 · 군 조례에 따라 동물원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습니다.

동물보호(명예)감시관 제도 운영

- 시 · 도지사, 시장 · 군수는 동물보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물보호감시관을 지정하여야 하며,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감시와 학대동물의 구조 · 보호를 위해 동물보호명예감시관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.



아껴주세요!

적정한 사육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.

시 · 도지사

- 반려동물(개)의 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해 시 ·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

반려동물(개) 소유자

- 반려동물(개)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, 운동, 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
-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한 치료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.

동물운송자

- 운송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제공하고 급격한 출발 · 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않도록 운전에 유의해야 하며
- 사용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않고 급격한 체온변화, 호흡 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.